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경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6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이경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정재웅, 이태성, 강동길, 박상구,  
최선, 김정태, 임만균, 문병훈,  
김종무 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시의 여건을 감안하여, 역세권 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하고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대상 역세권을 확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대상을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던 것을 전역세권으로 확대함(안 제6조제5항제1호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제1호 중 “이내 지역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”을 “이내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안
<p>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.</p> <p>1.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<u>이내 지역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.</p> <p>1. ----- ----- <u>이내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